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474

발의연월일: 2024. 9. 2.

찬 성 자 : 임오경 • 이기헌 • 강유정

한병도 • 김재원 • 민병덕

조계원 · 서영교 · 진선미

김현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정부는 스포츠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이자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으로 인식하고 2007년 스포츠산업진흥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법과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36조에 의해 설립된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(이하'진흥공단')은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진흥공단의 설립근거에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사업내용이 부재하여 이와 관련한 사업을 수행할 직접적 근거규정이 없어 사업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및 인지도 가 저조하고 효율적 지원에 한계가 있음.

이에 진흥공단에 관한 사업과 활동 내용에 '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'을 추가하여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계획 및세부시행계획 추진 주체를 명확히 하고 관련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

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함(안 제36조제1항제6호).

법률 제 호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제36조(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 | 제36조(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 | | |
| 진흥공단) ① 제24회 서울올림 | 진흥공단) ① | | |
| 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| | | |
|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 | | | |
| 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 | | | |
| 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 | | | |
| 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(이 | | | |
| 하 "진흥공단"이라 한다)을 설 | | | |
| 립한다. | | | |
| 1. ~ 5. (생 략) | 1. ~ 5. (현행과 같음) | | |
| <u><신 설></u> | 6.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| | |
| | 필요한 사업 | | |
| <u>6.</u> (생 략) | <u>7.</u> (현행 제6호와 같음) | | |
| ② ~ ⑤ (생 략) |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| | |